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수입증지로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기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를 ” 여성회관 징수관이 발행한 납부고시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변경하여야 한다”를 “변경해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시설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시설사용과 수강에 있어 사용·수강일 15일전에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는 납부액 전액을 반환 해주어야 하며, 사용·수강일 7일전부터 15일이내까지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시는 10%를 공제후 잔액을 반환 하고, 사용·수강일 7일 이내에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시는 20%를 공제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수강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수입증지” 및 “도수입증지납부”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